6월은 호국보훈의 달 입니다.



국토교통부



수신 극동대학교총장(비행교육원장)

(경유)

제목 전문교육기관(극동대학교 비행교육원) 조종사과정 지정 승인 발급 알림

- 1. 관련근거
 - 가. 항공안전법 제48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및 별표 12
 - 나.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-730호('19.12.09)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
 - 다. 국토교토부훈령 제1237호('19.10.28)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 검사업무지침
 - 라. 극동대 일현학원-145호('21.06.15) 전문교육기관 조종사과정 신청
- 2. 위 관련근거에 따라 귀 대학교 비행교육원에서 제출한 전문교육기관(조종사과정) 지정신청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, 관련기준에 적합하여 붙임과 같이 지정서와 훈련운영기준 등을 발급하오니 제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.
- 붙임 1.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1부
 - 2. 극동대학교 비행교육원 훈련운영기준 1부
 - 3. 극동대학교 비행교육원 교육규정 1부. 끝.

국토교통부장관

전문임기제 가 항공안전정책 전결 2021.6.21. 급 가장

협조자

시행 항공안전정책과-3128 접수

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어진동) 11 / http://www.molit.go.kr

전화번호 044-201-4309 팩스번호 044-201-5628 / hbp133@molit.go.kr / 비공개(7)

청렴한 공직사회, 행복한 국민생활

문서관리카드항공안전정책과-3128 1-1